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35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 : 윤준병 · 염태영 · 임미애

황명선 · 서삼석 · 문대림

이병진 • 이기헌 • 신정훈

문정복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농어업재해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함에 있어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6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
	승)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6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	
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	
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기금으
	로의 전출금
<u>7.</u> (생 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